

의안번호	2211181
의 퇴 인	장철민의원
회 답 일	2025. 7.25.
추 계 번호	25E349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세
감면한도 확대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청년 취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를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-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399억원 등 2026~2027년 2년간 총 837억원(연평균 418억원)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(안 제30조제1항)	-399	-438	-837	-418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30조제1항 (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)	○ 비수도권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액 확대 - (현행) 청년, 60세 이상,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(2026년 12월 31일까지)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(청년은 5년)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70%(청년은 90%)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* * 세액감면 한도: 과세기간별 200만원 - (개정안) <u>세액감면 한도: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,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</u>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0조제1항 (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2026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
 - 법 시행 이후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
 -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,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6년부터 세수효과 발생(징수 기준)
-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감면 실적

- (감면실적)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4년 1조 1,378억원임

[표 2]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조세지출액

(단위: 억원, %)

	2020 실적	2021 실적	2022 실적	2023 실적	2024 잠정
조세지출액	7,792 (28.40)	8,397 (7.8)	9,667 (15.1)	9,609 (-0.6)	11,378 (18.4)

주: ()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(2) 추계 방법

-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으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40세 이하 근로자 중 소득세 감면액이 200만원(감면 한도액) 이면서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소득세 신고현황 자료 활용
 -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(청년, 60세 이상, 장애인, 경력단절자) 중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(15~34세)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현황 자료가 필요하지만, 감면대상별로 신고현황을 구분하기 어려워 40세 이하 취업자의 총급여규모별 소득세 감면현황 자료(국세청 제출) 활용
 - 따라서 동 자료에는 청년 외에 장애인 및 경력단절근로자(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의 약 0.8% 중 일부)가 포함되어 있음
 - 2023년 기준 소득세 감면대상 금액(산출세액의 90%)이 현행 감면한도(200만원)를 상회하지만, 감면받은 소득세액이 200만원인 근로자로서 감면한도 확대 시 추가 감면이 가능한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계
 -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로서, 감면 한도(200만원) 만큼 감면받은 청년 근로자는 51,000명으로 집계됨([표 3]참조)
- 총급여규모별로 소득세 감면대상 금액이 현행 감면한도(200만원)를 상회하는 경우 개정안에 따른 추가 감면액을 추정한 후, 추가 감면액(추정치)에 적용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세수효과 추계
 - 추가 감면액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2023년 귀속 기준 소득세 감면대상 금액(산출세액의 90%)이 현행 소득세 감면한도(200만원)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과 100만원(감면한도 확대분) 중 적은 금액으로 함
 - 총급여규모별 1인당 추가 감면액(추정치)에 적용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세수효과 추계

3) 추계 결과

-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할 경우 세수 감소액은 2023년 기준 약 330억원으로 예상됨

[표 3]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
세수효과 추계 (2023년 기준)

(단위: 명, 백만원)

총급여액 규모	현행					1인당 추가 감면액 ²⁾	세수효과 (억원)
	적용 인원 ¹⁾	1인당 산출세액	1인당 소득세 감면대상 금액	1인당 소득세 감면액	1인당 결정세액		
	A	B	C=B×0.9	D	E	F=MIN(C-D, 백만원)	G=-F×A
합계	51,020	3.6	3.2	2.0	1.2		-329.9
1천만 이하	-	-	-	-	-	-	-
15천만 이하	-	-	-	-	-	-	-
2천만 이하	-	-	-	-	-	-	-
3천만 이하	-	-	-	-	-	-	-
4천만 이하	5,887	2.4	2.1	2.0	0.2	0.1	-6.8
45천만 이하	12,150	2.6	2.3	2.0	0.4	0.3	-38.9
5천만 이하	12,545	2.9	2.6	2.0	0.6	0.6	-79.8
6천만 이하	13,309	3.6	3.3	2.0	1.1	1.0	-133.1
8천만 이하	5,698	5.1	4.6	2.0	2.4	1.0	-57.0
1억 이하	983	8.8	7.9	2.0	5.9	1.0	-9.8
2억 이하	351	17.5	15.8	2.0	14.6	1.0	-3.5
3억 이하	22	56.4	50.8	2.0	53.4	1.0	-0.2
5억 이하	64	87.2	78.5	2.0	84.6	1.0	-0.6
10억 이하	9	202.5	182.3	2.0	199.6	1.0	-0.1
10억 초과	2	401.2	361.1	2.0	397.4	1.0	0.0

주: 1.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40세 이하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로서, 40세 이하 근로자 수에 장애인 및 경력단절근로자(전체 인원의 0.8%)가 포함되어 있으나,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이들이 포함된 자료 활용

1)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40세 이하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수

2) 추가 감면금액은 소득세 감면대상 금액(C)에서 현행 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(D)과 1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함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세수효과는 기준연도(2023년) 세수효과에 최근 4년 조세지출액 증가율(9.9%)을 반영하여 추계

- 2023년 귀속 기준 세수효과에 최근 조세지출액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계할 경우 개정안에 따라 2026~2027년 2년간 총 837억원(연평균 418억원)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(안 제30조제1항)	-399	-438	-837	-418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